

4.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폐지사유

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된 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”(대통령령 제15903호, 1998.10.1) 및 “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”(총리훈령 제386호, 1999.7.5)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386호(1998.12.4)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

3. 개정근거

가. 관계법령

-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(대통령령제15903호)
-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(총리훈령 제386호)

나. 관련지침

- 행정자치부13310-11(2003.6.23)호의 관련법령 폐지 통보
- 서울시 건국 13310-29(2003.6.24)호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등 폐지 통보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없음

5. 폐지조례안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